

<p>감안하여 금년말로 만료되는 점포 사용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줄 것을 요망</p> <p>4. 전문위원 검토 의견 요지 (전문위원 : 윤병국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재 동대문운동장상가는 서울시와의 수의 계약(계약만료일 2001.12.31)에 의해 64개 점포에 51명의 상인이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.</li> <li>○ 동대문운동장상가 임대와 관련한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면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66년 12월 서울시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 취득</li> <li>-93년 11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 계약 임대특혜 논란</li> <li>-93년 11월 30일 : 96년부터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사용허가</li> <li>-95년 12월 ~ 96년 4월 청원에 대한 시의회 권고의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: 청원인들의 권리보호 측면과 서울시의 재정수입증대 등 양측 이익을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"시에 권고"</li> </ul> </li> <li>-96년 7월 3일 : 정책회의 결정(사용료 현실화)</li> <li>-96년 11월 7일 : 수의계약 시방침 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: 사용료 현실화 기준안 마련(95년도 사용료 기준 127.3% 인상)</li> </ul> </li> <li>-99년 2월 19일 : 정책회의 결정(유예기간 부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: 점포정리 및 명도를 위하여 2001년 말까지 유예기간 부여, 단 2000.6월말까지 화해조서 제출조건</li> </ul> </li> <li>-99년 3월 24일 : 스포츠상가 사용허가 시방침 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: 화해조서 작성의 신속적 운영. 2000.6월말까지 화해조서 제출</li> </ul> </li> <li>-99년 4월 22일 : 동의각서 공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: 2001년 12월말까지 점포반환 및 2000년 6월말까지 화해조서 제출 약속</li> </ul> </li> <li>-2000년 8월 31일 화해조서 전원제출</li> <li>-2000년 12월 18일 화해조항 합의 판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: 2002년 1월 1일부터 해당재산(점포)을 명도함.</li> </ul> </li> <li>-2001년 6년 13일 동대문스포츠상가 입대</li> </ul> </li> </ul>	<p>기간 1년연장에 관한 청원 제출(최명옥 의원 소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반적으로 계약은 쌍방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이고, 「제소전 화해」란 민사분쟁에 관하여 소 제기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신청을 하는 제도로, 당사자간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.</li> <li>○ 99년도 서울시와 청원인간에 이뤄진 동대문운동장 스포츠상가에 대한 임대계약은 행정행위로서의 공신력을 갖추었고 민사상의 계약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매매, 위탁 등 공유재산의 관리·처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나, 오늘의 거대한 스포츠타운을 형성시킨 청원인 나름대로의 공로도 인정하고 얼마 남지 않은 월드컵을 대비해 그간에 이루어놓은 국제상거래의 신용도도 높여주는 방안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요망됨.</li> <li>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</li> <li>6. 토론요지 : 없음</li> <li>7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</li> <li>8. 심사결과 : 의견서 체택 본회의 부의하기로 함.</li> <li>9. 소수의견의 요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가임대 점포주와 점포정리 및 명도를 위한 유예기간을 2001년 말일까지 부여하고 동의각서 공증 및 화해조항 합의 확정판결이 난 상태에서 임대사용 기간을 1년간 연장해준다는 것은 곤란하며, 청원내용을 수용할 경우 특혜부여의 논란소지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.</li> </ul> </li> <li>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 견 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청원명 : 동대문운동장 상가 2002년까지 사용연장에 관한 청원</li> <li>○ 처리하여야 할 기관 : 서울특별시장</li> <li>○ 채택의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청원인들은 공유재산인 동대문운동장의 점포를 허가받아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상인들로 서울시 방침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이</li> </ul> </li> </ul>
---	---

<p>200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입장에 처해 있으며,</p> <p>-스포츠용품을 주로 취급하는 이곳 상가는 지난 96년 7월 3일 서울시에서 계속 사용허가 조건으로 사용료를 조례의 범위를 초과하는 128% 인상을 요구하였고, 이후 서울시는 점포사용 허가를 일반경쟁입찰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만 허가키로 결정하고 화해조서를 제출케 함으로써 상인들에게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주게 되었음.</p> <p>-그간 청원인들은 2002년 월드컵 특수를 대비하여 점포 수리와 사업영역 확대 등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왔으며, 특히 2002년 월드컵기간 중 많은 국가들에 스포츠용품 쇼핑코스로 소개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관광코스로 지정되어 취재대상이 되고 단체주문 등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금년 말로 만료되는 점포 사용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으로,</p> <p>-청원인들이 2002년 월드컵 특수를 대비하여 점포를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사업영역을 국제적으로 넓히는 노력을 경주하여 국제적인 거래까지 형성되는 활발한 스포츠상가로 발전시킨 사실이 인정되고,</p> <p>-거대한 스포츠 타운을 형성시킨 공로와 월드컵을 대비하여 청원인들이 이루어 놓은 국제 상거래 신인도를 지켜주는 의미 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임대사용 기간을 2002년 월드컵경기 종료시까지 연장하여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치구간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심사 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931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01년 9월 일 행정자치위원회</p> <p>1. 심사경과      가. 제안자 및 제안일자 : 2001년 8월 20일,          서울특별시장 제출      나. 회부일자 : 2001년 8월 22일      다. 상정일자 :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</p>	의안 번호	931	<p>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(2001년 9월 4일 상정 의결)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김건진)</p> <p>가. 제안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용암 4-2지구 11구획에서 재건축조합이 구성되어 현재 아파트를 건립 중에 있으며, 아파트 중간에 은평구와 서대문구가 경계 하므로 향후 주민 및 행정불편을 위하여 서대문구 지역을 은평구로 편입시키고자 함.</li> </ul> <p>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김태호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재 용암 4-2지구 11구획에서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으며, 금년 10월에 입주예정임.</li> <li>○ 아파트 부지 중 242평 정도가 서대문구 복가좌동 275-1로 되어 있고, 나머지(약 65%)는 은평구 응암동으로 경계가 분할되어 있어 주민 입주시에 행정과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바, 서대문구 지역을 은평구로 흡수케 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.</li> <li>○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구에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모두 찬성을 얻은바 있으며, 행정구역을 통일시키는 것이 향후 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질 것임.</li> </ul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</p> <p>5. 토론요지 : 없음</p> <p>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</p> <p>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</p> <p>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다음 페이지에 계속)</p>
의안 번호	931		